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**팩스** 02-536-5410

보 도 자 료

2022. 5. 19.(목)

제 목 **허위 특허 등록과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A제약회사 등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검(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)은 오늘(5. 19.) **A제약회사**와 **A**(지주회사)를 **공정거래법위반죄**로, **제제**(製劑)**팀장 甲**(現 A그룹 계열사 대표), **제제팀 연구원 乙**, **IP**(Intellectual Property, 지식재산권) **팀장 丙**, **IP팀 팀원 丁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**로 **각각 불구속기소**하였음

  - ① **A제약회사와 A**는 **생물학적 동등성 시험*** **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**(항궤양제) **특허를 등록**한 후 '16. 2.경 복제약을 생산하는 **경쟁사 B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**하고, 그때부터 '17. 10.경까지 **위 소송 사실을 병·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**하였고, ② **甲, 乙, 丙, 丁**은 **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담**하였음

    *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(약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)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

-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**노트북을 은닉**하고 **자료를 삭제**한 **신제품센터장 戊**를 **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**로 **불구속기소**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**피고인**

- 주식회사 A제약, 주식회사 A(지주회사), 甲(前 제제팀장, 現 A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), 乙(제제팀 연구원), 丙(前 IP팀장), 丁(前 IP팀 팀원), 戊(現 신제품센터장)

○ **공소사실 요지**

- **[甲, 乙, 丙, 丁]** ’15. 1.경 공모하여 **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**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’16. 1.경 특허등록되게 함 **[위계공무집행방해]**

  ※ 실제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1회 성공하였으나, 데이터를 조작·가공해 3회 성공한 것처럼 특허명세서에 거짓 기재

- **[A제약 및 A]** ’16. 2.경 위와 같이 등록된 거짓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 B를 상대로 한 **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**한 다음 ’17. 10.경까지 **소제기 사실을 병·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**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 **[공정거래법위반]**

- **[戊]** ’22. 3. 11.경 검찰의 압수수색 착수 소식을 듣고 **제제팀 연구원 乙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겨 놓고,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 [증거은닉 및 증거인멸]**

Ⅱ 주요 수사 경과

○ ’21. 3. 공정거래위원회, A제약회사 및 A(지주회사) 고발

※ 과징금 : A제약회사 21억 4,600만 원 / A 1억 5,100만 원

○ ’21. 5. 특허청, A제약회사 수사의뢰(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등록)

○ ’22. 3.～4. A제약회사, A 및 甲, 乙, 丙, 丁 등 압수수색(1차, 2차)

○ ’21. 9.～’22. 5. 참고인들 및 피의자들 조사

Ⅲ 참고 사항

○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**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**임

※ A제약회사는 경쟁사 B 대비 매출액 약 7배 규모(’21. 기준)의 제약회사임

○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인만을 고발하였으나, **검찰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의 수단이 된 위계공무집행방해(데이터를 조작해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)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기소**함

○ 한편, **검찰 수사를 통해**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**제제팀,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**임을 확인함

○ 앞으로도 **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**할 예정임 ▨